



제297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

**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**

[원주영 의원 대표발의]

**검 토 보 고 서**

2023. 8. 30.

**자치행정위원회**

#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원주영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8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다.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라. 장애인기업활동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(안 제6조~제7조)
- 마. 장애인기업 우대 및 구매촉진 사항을 규정(안 제8조~제9조)
- 바. 장애인기업 홍보 및 포상에 관한 규정(안 제10조~제11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기업지원과
- 라. 입법예고 : 2023. 8. 30. ~ 2023. 9. 4. (6일간) /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남양주시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.
  
- 주요 내용으로는,
  - 안 제7조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,
  -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장애인기업의 우대와 제품의 구매촉진을 의무화하였으며,
  - 안 제10조에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  
-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# [참고사항 :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]

- 전국 지자체 : 32개 시군 조례 제정
- 경기도 지자체 제정 현황

연번	지자체	조례명	제개정일
1	경기도	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	2016. 7. 19.
2	경기도 고양시	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	2019. 12. 31.
3	경기도 성남시	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	2019. 9. 16.

##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

[시행 2022. 6. 29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7. 3. 21.>

1. “장애인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
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

2. “장애인기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.

가.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
나.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(이하 이 조에서 “장애인고용비율”이라 한다)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. 다만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3. “장애경제인”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.

4. “공공기관”이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

**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·정보·기술·인력·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)**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.

② 정부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때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중소기업창업 지원

법」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·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.

**제9조(자금지원 우대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·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9조의2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**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직접 생산·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·용역 및 공사(이하 이 조에서 “장애인기업제품”이라 한다)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이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,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.

## 「중소기업기본법」

[시행 2022. 11. 15.] [법률 제19044호, 2022. 11. 15., 타법개정]

**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**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소기업시책”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
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
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##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2. 12. 27.] [법률 제19146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**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구매 증대)**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·용역 및 공사(이하 “제품”이라 한다)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(受注)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(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**제5조(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)**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생략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7조(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)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1.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·훈련 및 연수
  2. 장애인 창업지원
  3.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
  4. 장애인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
  5.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
  6.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
  7.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향후 제정된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부서의 세부적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추계 가능한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는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

### 4. 작성자

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장 임대훈